

# 감사보고서

교육부 장관 귀하  
 학교법인 추계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추계학원 (추계예술대학교)의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추계학원 (추계예술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2.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3.학교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4.부속병원 관련				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추계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  
 2. 추계예술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(별지 제1의2호 서식)  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9년 4월 26일

학교법인 추계학원

감 사 김 호 준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4484 호)

감 사 이 도 신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576 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19년 4월 26일

학 교 법 인 추 계 학 원

이사장 임 형 빈



피감사 기관장

2019년 4월 26일

추 계 예 술 대 학 교

총장 임 상 혁



# 감사보고서

## 학교법인 추계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추계학원의 2018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,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추계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추계학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9년 4월 26일

학교법인 추계학원

감 사 김호준 대표이사  
감 사 이도신 이사

피감사자(임회인)

직 명 사무국장

성 명 송상문 사무국장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 할 것

(법인 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

[별지 제1의1호 서식]

## 학교법인 추계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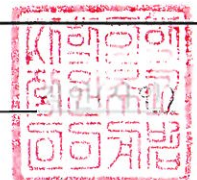
(회계연도 :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지적사항 없음	지적사항 없음
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
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추계학원 이사장 임 형 빈



(법인 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